

# 「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」 공공기관 위탁 동의(안)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▪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(2024. 11. 22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)

### 가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신규로 건립되는 “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”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포항시 청소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.

### 나. 제안사유

- 생활환경과 주민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『다원 복합 센터 생활 SOC 복합화사업』에 따른 건립 추진.
- 남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시설 확충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.
-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「포항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 조례」에 따른 출연기관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요구되는 공공성·효율성을 갖춘 공공기관임.

## 다. 제안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2항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3항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제1항
- 「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
-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## 3. 위탁 대상 시설 현황

- 위탁시설 :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 
(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564,1564-1 / 다원복합센터 내)

층 별	연면적(m <sup>2</sup> )	시 설 용 도	비고
총 연면적	840.67		7명 (관장1, 사무직3, 사업인력 3)
1층	87.08	자치활동실	
3층	753.59	문화놀이터, 특별활동실 3(댄스실, 노래 등), 강의실 3	

- 위탁기간 : 2025. 3. 1. ~ 2027. 12. 31. (3년간)
- 위탁사무
  -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
  - 포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수행
  -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·예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  - 청소년의 정보·문화·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
  -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
  - 청소년시설 관리·운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
  - 그 밖에 포항시가 위탁하는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동의안은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최초 위탁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-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연면적 7,765㎡로 건립예정인 다원복합센터는 포항시 남구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수영장, 청소년문화의 집,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 중 포항시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1층에 87㎡의 자치활동실과 3층 753㎡에 문화놀이터, 특별활동실 및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음.
- 「청소년활동 진행법」 제16조제1항 및 「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제1항에 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, 포항시 청소년재단에서 다년간 (복구)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청소년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남구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으로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남구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남구 지역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청소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#### 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## 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◎ 청소년활동 진흥법

제10조(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)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 1. 청소년수련시설

가. 청소년수련관: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나. 청소년수련원: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다. 청소년문화의 집: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

라. 청소년특화시설: 청소년의 직업체험, 문화예술, 과학정보,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

마. 청소년야영장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,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

바. 유스호스텔: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·설비와 부대·편익시설을 갖추고, 숙식편의 제공,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(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·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)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

2. 청소년이용시설: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

[전문개정 2014. 1. 21.]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, 위탁 계약

의 기간·조건·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 
<신설 2017. 12. 12.>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
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 [전문개정 2014. 1. 21.]

## ◎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5조(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
2. 청소년보호·복지·상담에 관한 사업
3.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
4.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·관리 <개정 2022.1.5.>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·대행에 관한 절차는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22.1.5.>

## ◎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<개정 2024.10.16.>
2. “청소년단체”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<개정 2024.10.16.>
3. “청소년수련시설”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가 「청소년활동 진

홍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4. <삭제 2024.10.16.>

5. <삭제 2024.10.16.>

**제13조(위탁운영)**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24.10.16.>

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4.10.16.>

## ◎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

**제8조(의회 동의)**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

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·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·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4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

5. 연간 위탁·대행금액(수탁·대행기관이 수탁·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·운영비를 포함한다)이 1억원 이하인 사업

6.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7. 재난, 재해 대응 등 위탁·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(재대행)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최초 위탁·대행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재위탁(재대행)·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